

대학원생을 위한
인권존중 캠퍼스

•••
Human Rights Violations &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Prevention Guide



인권침해 및 성희롱 · 성폭력 예방가이드

교수용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센터가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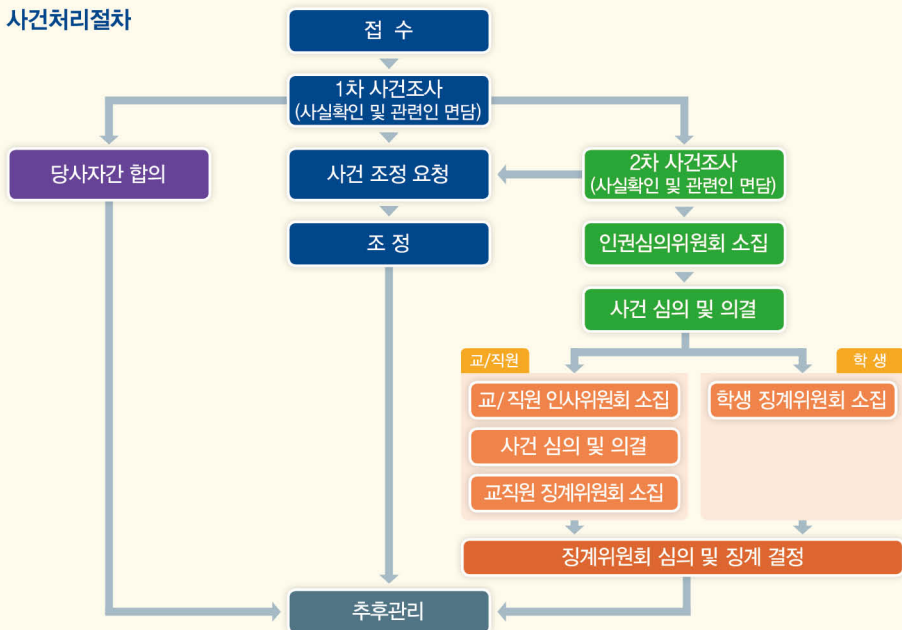
사건 처리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 문제를 상담·조사·조정·중재·심의 합니다.

사건유형

| I. 성희롱·성폭력 | II. 인권침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준) 강간, (준) 강제추행 성추행 (신체적 성희롱) 데이트 성폭력 음란행위 (통신매체이용), 불법촬영 등 직장 내 성희롱 기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격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언 혐오적 발언 성차별 발언 기타 학습권 및 연구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욕적 언사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학사상 권한 남용 |

사건처리절차



인권 / 폭력예방교육 및 연구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성평등 의식 및 인권·젠더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차별·폭력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학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 ▶ 인권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교육 자료 제작·배포
- ▶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심포지엄, 세미나 등 개최



학생상담 주요 원칙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 학생이 용기를 내 준 것에 대하여 격려하고, 학생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수의 주된 역할입니다.
- 상담의 주요 목적은 사건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잘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 학생이 스스로 찾아온 이유는 사건에 대한 잘못을 가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나 지혜를 얻기 위함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은 학생이 적절한 도움을 찾고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 어떠한 직책이나 명분 없이 임의로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교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교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세요.

※ 뒷면 교내의 지원시설 연락처 참조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2차 피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주변인 및 피해를 가한 행위자(가해자)의 말이나 소문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것

2차 피해 예시

1.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

- 행위자 옹호 및 두둔
- 피해자 비난 및 평소 행실 등 험담
- 신상노출 (소문, SNS에 올리는 행위)
-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선부른 판단

2.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 피해자 탓하기
- 피해자에 대한 험담
-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
-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

2차 피해 예방

- 피해자 지지하고 신뢰하기
- 피해자의 평소행동, 성격 등에 편견 갖지 않기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기
- 비밀유지, 소문내지 않기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길 원치 않는다면 질문하지 않기





인권침해 및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 정의와 관련 규정



인권침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됨.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지칭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이에 포함됨.
(*'성폭력'은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공공기관 등에서는 주요 이슈인 '성희롱'을 따로 구분·강조하기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부행위별 정의 및 관련 규정과 법률

■ 성희롱

정의 교육, 업무, 고용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불쾌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관련규정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2017. 12. 1, 개정: 2018. 12. 10.)

관련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법

■ 성추행 (강제추행)과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것

관련법률 형법 제3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을 하는 것.

관련법률 형법 제3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 음란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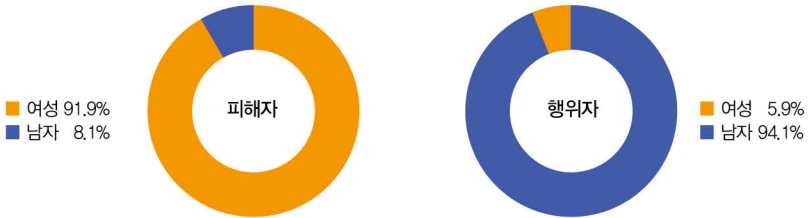
정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관련법률 형법 제2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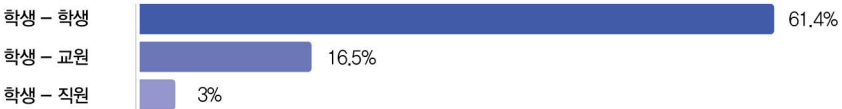


대학(원)생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및 행위자 남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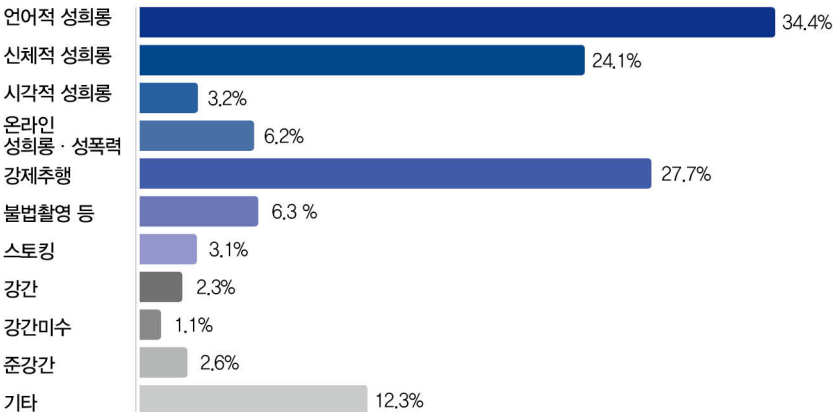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인-피신고인의 관계유형



피해발생 상황 (복수응답)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실태: 피해양상 (복수응답)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판결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어깨를 주무르기만 한 것도 성추행인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꺼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다.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발언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2010. 4. 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모 대학교의 A교수는 수업 도중 B학생이 탄짓을 하자 “나중에 술집 가서 술 따르는 그런 일 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만 따라 주는게 아니라 2차도 나간다는 거 같던데.”라고 말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수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 나간다는 말은 성적 함의가 높게 포함되어 있는,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교수가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수업 중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다’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학교수의 수업 중 체벌 및 막말도 인권침해인가?

2017. 2. 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모 대학교의 B교수는 수업시간에 “어릴 때는 맞고 자라야 한다.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깨를 죽대로 내리 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욕설을 하였음. 또한 오존 층 파괴에 따른 신체적 피해를 설명하면서 “신기하게도 감동이는 안 걸려요. 백인은 잘 걸려요.”등의 발언을 하였고, 여학생들에게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면 수업을 듣지 마라, 여자는 애를 낳아야 하니까 컴퓨터를 많이 하면 안된다. 집에서 책을 읽어라.”등의 발언을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생 지도 시의 성희롱 예방안내

다음은 각 대학 고충상담 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한 성희롱 관련 상황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학생 지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중의 농담

다소 위험한 수위의 성 관련 발언이나 농담을 하는 경우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판단에는 특정한 성에 대한 비하는 물론이고 외모나 능력에 관련한 성적 농담도 듣는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도 없이 건넨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상대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이라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접촉

학생 면담 중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무릎을 토닥거리는 경우
학생 지도 중 교수 활동에 집중하여 얼굴이나 몸이 바짝 닿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한 경우

그 자리에서, 학생은 불편한데도 참았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난 후 신고나 상담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피해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자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술자리가 이차 삼차로 이어지거나 일부가 만취하는 경우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은 과도한 음주 상황이나 그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교수님 자신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교수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도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만취한 학생들 간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 책임자를 정해서 남아있는 학생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MT, OT 및 답사 지도 시

MT, 답사 등 '숙박을 하는 학교 행사' 중 남녀가 한 방에서 자거나,
단체로 선정적인 게임을 하는 경우

외박, 야외활동, 음주는 성희롱 유발과 관련이 있는데, 학과 및 동아리 OT, MT나 답사 등의 학교 행사에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사건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단체로 진행한 프로그램이 성희롱으로 신고 되어 언론에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출발 전부터 학생들에게 안전 운영을 당부하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4조(개인의 존엄과 가치)

건강과 혼인 및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등권)

모든 대학원생은 성별·국적·인종·연령·장애·종교·임신과 출산·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학업·연구권)

- ① 모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학위과정은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공정(公正)권)

- ①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정(公正)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公正)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거부권)

모든 대학원생은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상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래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 상담예약: <http://hrc.hanyang.ac.kr>
- 문 의: ☎ (02) 2220-1444 hyrights@hanyang.ac.kr
- 방 문: 학생회관 3층

교내지원

| | |
|-------------|--------------------------------------|
| 응급조치 필요시 | 한양보건센터 02-2220-1466 |
| 상담지원 필요시 |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02-2220-1498 |
| 무 료 법 률 상 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02-2220-1009 |

교외 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 | |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 해바라기센터 (서울대병원 내) | 02-3672-0365 (24시간, 증거채취 가능) |
| 동부 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내) | 02-3400-1700 (24시간, 증거채취 가능) |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 02-2263-6465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335-1858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

